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4-152
------------	--------

제출년월일 : 2024.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개정('24. 3. 5.)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으로 확대 개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4. 10. 10. ~ 2024. 10. 30.(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재정관리국 스마트정책과 정상욱 (☎ 3153-8427)